

1. 간접투자란 무엇인가?

-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투자증권, 파생상품, 부동산 및 실물자산 등 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함

2. 간접투자기구(투자펀드)의 종류는?

- 투자신탁 :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(투자신탁재산)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·운용하게 하고,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
- 투자회사 : 회사의 재산(투자회사재산)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(Mutual fund)
- 사모투자전문회사 : 회사의 재산(투자전문회사재산)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,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(PEF)

3. 해외자산 투자시 이중과세란 무엇이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가?

□ 이중과세는

○ 내국인이 외국자산의 취득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

① 1차적으로 외국의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

② 2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,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됨에 따라

⇒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국내와 국외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임

□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

○ 법인세법상(§57) 국내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(FTC : Foreign Tax Credit)를 두고 있음

- 내용 :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발생시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(한도 있음) 또는 손금산입

- 세액공제한도 : 법인세 산출세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

$$\text{세액공제 한도액} = \text{법인세 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국외원천소득}}{\text{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}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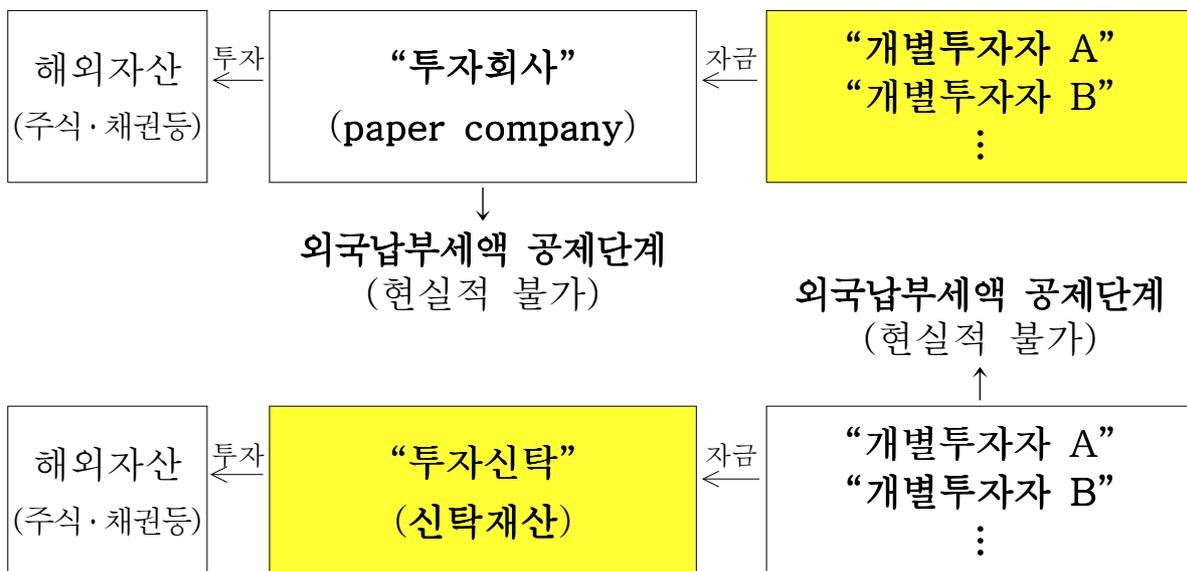
4. **현행제도하에서 해외자산에 간접투자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이유?**

① 간접투자기구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이유

- 투자신탁의 경우 법인세법상 실체가 없는 **도관**으로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
- **투자회사**의 경우 투자자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% 이상 배당을 하면 전액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(배당소득 공제제도) **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게 되므로**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됨

② 투자자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이유

- 투자신탁의 경우 개별투자자별로 외국납부세액을 구분 계산하는 것이 곤란하여 공제불가
- **투자회사**의 경우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것은 법인이지 투자자가 아니므로 공제불가



5. 간접투자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국내와 해외에서 이중과세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은 ?

- 해외자산 투자 수익률이 저하됨에 따라 간접투자기구가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고, 그 결과 투자자산 구조의 왜곡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발생
-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불형평
- 내국계 펀드와 외국계 펀드간 불형평이 발생하고 내국계 펀드의 국제경쟁력 약화
- 간접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등 금융산업 육성정책에 배치

6.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경우 구체적 세부담 사례는?

< 假 定 >

- 외국채권에 1천만원 투자
- 채권이자 1백만원 발생
- 원천징수 세율
 - 10%(A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)
 - 14%(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)

< 稅 額 計 算 >

“개별투자자 단계에서
이중과세 조정”

(×10%)

(×14%)

↑

(단위:천원)

	해외 원천 소득	해외 원천징수 세액①	차감 소득	환급 세액 ②	총 과세 소득	국내 납부할 세액③	외국 납부세액 공제④	차감 납부 세액 ⑤	총부담 세액 (①-② + ⑤)
직접투자	1,000	100	900	0	1,000	140	100	40	140
간접 투자	1,000	100	900	0	900	126	0	126	226
	1,000	100	900	100	1,000	140	0	140	140

↓

“간접투자기구 단계에서
이중과세 조정”

7. 금번 제도개편으로 인하여 해외 간접투자시 투자자의 세후수익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?

□ 개별투자자에게는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의 세후 투자수익율이 거의 동일하게 됨

○ 또한, 국가 세수측면에서도 간접투자기구단계에서 환급 해준 세액이 개별투자자 원천징수 단계에서 징수되므로 직접투자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결과

< 投資收益率 >

(단위 : 천원)

		총투자금액	투자수익	총부담 세액	세후수익	세후 투자수익율
직접투자		10,000	1,000	140	860	8.6%
간접 투자	現行	10,000	1,000	226	774	7.7%
	↓ 改定	10,000	1,000	140	860	8.6%

8. 공제 또는 환급받는 세액에 한도를 정한 이유는?

* 국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(14%) 한도

- 국내·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는 경우
 - 동 소득에 대하여 국내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 한도로 하고 있음
 - 이는 국내에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의 범위 내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임

*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

$$\text{세액공제 한도액} = \text{법인세 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국외원천소득}}{\text{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}}$$

-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에는
 - 신탁재산의 수익이 최종적으로 개별투자자에게 이자 또는 배당으로 지급되며 이때 14%세율로 원천징수 되므로
 - 이 세율을 공제(환급)한도로 한 것임

(例) 투자회사가 해외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1억원 수취시

[외국세율 20%(외국납부세액 : 20백만원)
국내세율 14%(국내납부세액 : 14백만원)인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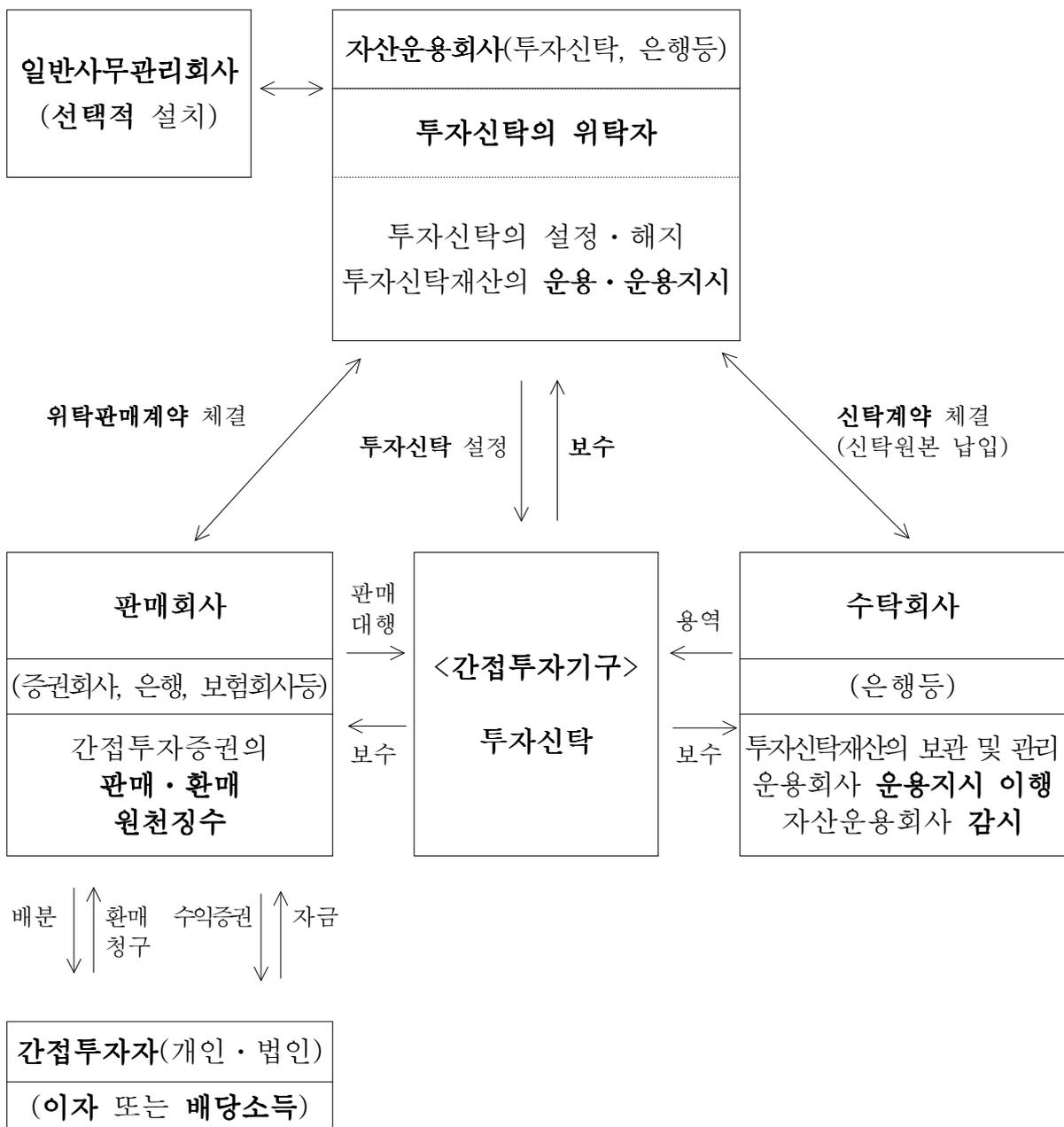
⇒ 국내에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14백만원이므로 이를 한도로 공제(또는 환급)함

9. 이번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?

- 금년 세제개편시 법인세법 제57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이번 개편내용을 반영하였음
-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
 - 구체적으로는 2006년 이후 투자펀드가 외국자산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됨

< 참고 > 간접 투자기구 개관

① 투자신탁



② 투자회사

